

1. 당원 규정

2015년 1월 10일 제31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5년 2월 28일 제32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5년 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8년 6월 24일 제63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활동, 당원의 권리, 당비납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광역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일 경우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전국사무처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입당신청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광역시·도당이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때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입당신청을 접수한 후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3조(당적)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본인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4조(이적) ① 소속 광역시·도당을 옮기고자 하는 당원은 전국사무처 또는 현재 소속된 광역시·도당에 이적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당원의 광역시·도당 이적은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이적 신청을 받은 전국사무처 또는 광역시·도당은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광역시·도당에 통보하고 이적신청을 처리한 후 신청을 한 당원에게 알려야 하며, 당원이 옮겨가는 광역시·도당 또한 이적신청을 통보받았음을 이적신청을 한 당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이나 전국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6조(재입당) ① 재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당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제7조(후원당원) ① 후원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후원당원이 되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후원당비를 약정하고 납부함으로써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제8조(당원 심사의 기준) ① 제2조 제2항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재입당 신청인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신청인의 공개적인 행동이나 의견이 당의 강령이나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지 여부
 2. 재입당 신청을 한 당원이 이전에 당에 명백하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② 당원자격 심사의 기간은 입당, 재입당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재심사) ① 입당 또는 재입당을 허가받지 못한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국당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는 전국당 상벌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광역시·도당에 알려야 한다.

제2장 당원관리

제10조(당원명부) ① 전국당은 당원명부에 대한 총괄 관리 권한을 가진다.

② 당원은 전국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명부는 전산자료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당의 대의기구의 결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재입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은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전국당과 광역시·도당은 전산자료에 당비 영수증 발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1년 6개월간만 보유할 수 있으며, 발부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탈당처리 2일 이내에 모든 자료를 삭제한다. 단, 제명당한 당원을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3년간 보유한다.

⑤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및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당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13조(당원의 권리)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 출할 권리. 단, 개인정보는 제외
4.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5.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 ② 청소년인 당원도 당헌이나 당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당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14조(당원의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비 및 재정 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2.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제15조(후원당원의 권리) ① 후원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공직후보의 선거권
2. 당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② 후원당원이 당원으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당원으로 전환된다. 반대의 경우도 같다.

16조 (당직을 맡는 자의 자격) 당헌 당규에 따른 각종 기구의 장을 포함한 위원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어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당규는 전국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2. 당비 및 재정 규정

2015년 1월 10일 제31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5년 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8년 6월 24일 제63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장에 의거하여 당비와 재정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당비) ① 당원 및 후원당원이 내는 정기당비는 1인당 월 3천원 이상 납부를 기본으로 한다.

② 1년치 당비를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당 당비 납부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정기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자원활동으로 당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당원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 당 활동에 봉사하는 것으로 당비 납부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해당 당원이 광역시·도당 또는 전국사무처에 사전 신청을 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과 전국사무처장의 승인을 동시에 얻은 경우에 한한다.

④ 당의 정강정책과 관련한 활동으로 구속, 수감, 수배 중인 당원은 해당 기간 중의 당비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해당 사유가 있는 당원이 소속되어 있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이 한다.

제3조(당비납부방법) ① 정기당비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전국당 당비 납부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② 분기(3개월)별로 미인출된 정기당비에 대하여 일괄 인출할 수 있다.

제4조(특별당비) 당원 및 후원당원은 정기당비 외에 특별당비를 낼 수 있다.

제5조 (정기 당비 수입의 배분) ① 정기당비 수입은 광역시·도당에 60%, 전국사무처에 30%, 전국정책위원회,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문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산하기구에 10%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국정책위원회 및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문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의 재정은 전국사무처에서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시·도당 배분금액 중 30%(총액대비 18%)는 창준위 이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70%(총액대비 42%)는 당비수입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③ 매년 예산편성시에 제1항의 배분비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되, 전국정책위원회,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부문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산하기구 배분비율은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광역 시·도당은 자체 규약에 따라 기초지역당원모임에 당비를 배분한다.

제6조(특별당비 및 당원확대캠페인수입의 배분) ① 특별당비는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당원(후원당원)의 의사에 따라 전국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배분된다. 다만, 당원(후원당원)이 어디에 귀속시킬 지를 특정하지 않은 특별당비는 전국당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말에 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여 별도의 재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입의 배분비율은 따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당규는 전국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당규3. 상벌규정

2014년 10월 11일 제29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5년 01월 10일 제31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5년 08월 29일 제36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7년 02월 12일 제51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9년 02월 17일 제70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2019년 04월 14일 제71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4조 및 제36조에 따른 상벌위원회와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적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성중립적이거나 성별과 성적체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성차별로 본다. 또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외의 분쟁 상황 안에서도 그것이 성이나 성적체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차별로 본다.
- ②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적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적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현재 혹은 과거의 법적·비법적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말한다.
- ④ “2차 가해”라 함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 주장을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제2장 상벌위원회

제3조(상벌위원회의 설치) ① 상벌위원회는 당원의 징계와 시상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이다.

② 상벌위원회는 전국당에 두되, 시·도당도 자체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상벌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4조(비밀엄수 의무) 상벌위원과 상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권한) ① 상벌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대하여 징계 및 시상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과 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위원회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 상벌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께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벌위원 께위 시 전국운영위원회가 상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출하며, 이 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께위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상벌위원회에는 산하에 제소된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심의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소위원회(이하 “성차별등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상벌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⑥ 상벌위원회는 전문성과 관련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자문위원은 전국 운영위원회가 상벌위원회 추천을 받아 정한다.

제7조(개최 및 의결)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상벌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상벌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④ 상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처 당직자 등 상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려면 상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긴급한 개최가 필요한 경우 등 상벌위원 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성과 영상 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화상회의로 상벌위원 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기타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상벌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제소 및 조사명령) ① 징계 제소는 전국상벌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시·도당에 자체 상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도당 상벌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운영위원회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그것이 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하거나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벌위원회는 제소 사유가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④ 「당내 평등문화만들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다른 각 당부별 평등문화책임자는 상벌위원회에 특정 사안에 대해 제소를 할 수 있다.

제9조(징계 절차 및 결정) ① 상벌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7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서면으로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제2항에 따른 소명방법을 알려야 한다.

② 피제소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상벌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30 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0 일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최대 90일을 넘을 수 없다. 연장할 때에는 미리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서면, 서면 또는 전자우편과 문자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상벌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를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벌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결되거나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확정되어 효력을 가진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 전이나 징계 의결과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지는 직무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갈등조정) ① 상벌위원회는 제소내용을 검토한 후에 징계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갈등조정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소인의 의견을 들은 후 갈등조정절차를 밟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상벌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당직자, 상벌위원, 갈등조정전문가 중에 해당 건에 대한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조정위원은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진술과 의견을 듣고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갈등조정절차는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심의에 들어간다.

제11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폭력 등으로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2.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당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당에 해를 입힌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직권정지 또는 직위해제
4. 교육이수
5. 경고

②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과 함께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내 회의 참가 및 당내 게시판 등에 게시물 게재 금지
2. 제소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또는 연락 금지
3. 경제적 피해의 배상
4. 기타 징계대상 행위의 중단, 피해의 회복, 2차 가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③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권고나 입장표명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도당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전국 상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해당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상벌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15일의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이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전국상벌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상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시상) ① 상벌위원회는 추천절차를 거쳐 당에 기여한 당원이나 활동에 대해 상을 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상 추천은 당원 누구나 할 수 있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도 그 결의로써 할 수 있다.

③ 시상의 명칭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④ 상벌위원회는 당에 기여한 비당원에게 감사장을 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세칙) 상벌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시도당 상벌위원회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

제17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녹색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제소자 어느 한 쪽만 당원인 경우에도 본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8조(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8조 제2항에 따른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운영위원회의 조사요청이 있거나, 상벌위원회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에, 당무위원회의 결의로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을 다루기 위한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등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성차별등조사위원회는 3인이상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당무위원회가 당직자, 전국사무처활동가, 전문가, 상벌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무위원회가 임명한다.
- ③ 성차별등조사위원회는 조사요청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60일 이내에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의뢰한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당무위원회의 결의로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성차별등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운영위원회,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본 장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조사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신청할 권리
4.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권리
5.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6. 사건 해결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①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본 장의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④ 본 장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당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피해자가 당직자일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건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임시조치 청구 등) ① 조사위원장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상벌위원장에게 본 규정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종결 시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벌위원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상벌위원장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위원장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해자가 상벌위원장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불이행 역시 본 규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된다.

제21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상벌위원회는 성차별 등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하되, 징계결정에 더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3.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㉔ 상벌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22조(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2.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상벌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예방)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은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당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전국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